

1. 개정이유

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503호, 2026. 3. 31. 공포, 10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2조의3, 안 제2조의4, 안 제2조의5, 안 제3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1조, 안 제11조의2, 안 제11조의3)

- 1)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
- 2)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

나.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(안 제6조, 안 제9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을 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의3제1항제1호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한다.

제2조의4제1항제1호 중 “계좌가”를 “계좌등이”로, “피해의심거래계좌(이하 “피해의심거래계좌”를 “피해의심거래계좌등(이하 “피해의심거래계

좌등”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피해의심거래계좌”를 “피해의심거래계좌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5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각각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사기이용계좌 번호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의 번호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피해금을”을 “피해자산을”로, “피해자 · 피해금통지서”를 “피해자 · 피해자산통지서”로, “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)”을 “(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피해금이 송금 · 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”를 “피해자산이 송금 · 이체 ·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

이”로, “(금융회사용)”을 “(금융회사등용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, “(금융회사용)”을 “(금융회사등용)”으로, “피해자·피해금”을 “피해자·피해자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금융회사 간”을 “금융회사등 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금융회사에”를 “금융회사등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각각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(금융회사용)”을 “(금융회사등용)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피해자·피해금”을 “피해자·피해자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금융회사에”를 “금융회사등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, “사기이용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”으로, “계좌의”를 “계좌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금액”을 “금액(가상자산의 경우 지급정지 당시의 종목, 개수, 가격 및 해당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계좌번호”를 “계좌등의 번호”로, “사기이용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“금융회사”를 각각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피해자·피해금”을 “피해자·피해자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“금융회사”를 각각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

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만원을 말한다”를 “다음 각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계좌의 경우 : 1만원

2.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 : 해당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 1만원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기이용계좌의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의”로, “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사기이용계좌가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사기이용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기이용계좌의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의”로, “사기이용계좌와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과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”을 “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자산”으로, “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”을 “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기이용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금융회사”를 각각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금융회사 및”을 “금융회사등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피해환급금의 지급 등)”을 “(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, “따라

피해환급금”을 “따라 피해환급자산”으로, “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”을 “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·이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”을 “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날”을 “날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,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 및 수량 단위로 한다.
2. 피해자가 송금·이체·이전·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에 피해환급자산은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한다.
3. 법 제10조제2항의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은 피해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,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총 피해금액등은 각 피해자의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

한 조직 및 인력

2.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피해환급금”을 “피해환급자산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“피해환급금”을 각각 “피해환급자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3제2항 본문 중 “금융회사는”을 “금융회사등은”으로, “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”으로, “사기이용계좌·피해의심거래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·피해의심거래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”를 “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, “사기이용계좌·피해의심거래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·피해의심거래계좌등”으로, “금융회사의”를 “금융회사등의”로, “금융회사에”를 “금융회사등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”를 “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”으로 한다.

2.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

금융회사등

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가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위반행위란 바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호 아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한다.

별표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자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고, 같은 호 차목 위반행위란 차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 하며, 같은 호 카목 위반행위란 카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, “피해환급금”을 “피해환급자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타목 위반행위란 타목 중 “금융회사가”를 “금융회사등이”로, “전자금융거래를”을 “전자금융거래등을”로 한다.

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2호의2서식]

지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수사관 인적사항	소 속	직급
	근무지	
	성 명	생년월일
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지급정지 요청계좌	금융회사등	계좌번호등	명의인
	입금일시	개설점포	금액등
피해자산 이전계좌	금융회사등	계좌번호등	명의인
	입금일시	점포	금액등
	출금일시	점포	금액등

지급정지 요청사유(구체적으로 적습니다)

그 밖의 사항	담당자 성명	직위	연락처
------------	--------	----	-----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금융회사 귀하

첨부서류	1.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 본문) 2. 수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3항)
------	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계좌”를 “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2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계좌번호”를 “계좌번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피해금”을 “피해자산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계좌번호”를 “계좌번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4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“피해자·피해금통지서”를 “피해자·피해자산통지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 중 “피해환급금”을 “피해환급자산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피해금”을 “피해자산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피해금을”을 “피해자산을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 중 “사기이용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

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계좌”를 “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 중 “사기이용계좌”를 “사기이용계좌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“피해자·피해금통지서”를 “피해자·피해자산통지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 중 “피해환급금”을 “피해환급자산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피해금”을 “피해자산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피해금을”을 “피해자산을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계좌번호”를 “계좌번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피해금”을 “피해자산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계좌번호”를 “계좌번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4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2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”을 “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지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수사관 인적사항	소 속		직급
	근무지		
	성 명		생년월일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지급정지 요청계좌	금융회사등	계좌번호등	명의인
	입금일시	개설점포	금액등
피해자산 이전계좌	금융회사등	계좌번호등	명의인
	입금일시	점포	금액등
	출금일시	점포	금액등

지급정지 요청사유(구체적으로 적습니다)

그 밖의 사항	담당자 성명	직위	연락처
------------	--------	----	-----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금융회사 귀하

첨부서류	1.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 본문) 2. 수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3항)
------	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피해자 정보				
성명	생년월일	피해자계좌등 현황 (금융회사, 예금종별, 명의인, 계좌번호 등)	피해금액등	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

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	
사기이용계좌 현황 (금융회사, 예금종별, 명의인, 계좌번호 등)	
소멸대상 채권의 금액	
지급정지 조치 일시	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 대표 (서명 또는 인)

금융감독원 귀하

첨부서류

1.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
- 가.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본문)
- 나.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)
- 다.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)
2.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
- 가.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 본문)
- 나. 수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3항)
- 다.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호)
- 라.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(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)

이의제기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
지급정지 계좌등	금융회사등	개설점포	예금종별
	계좌번호등		명의인

이의제기 사유(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)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금융회사 귀하

첨부서류	1.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.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 <u>시행령</u>	<u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 <u>시행령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 <u>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 」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 」----- -----.
제2조(금융회사의 범위) 「 <u>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과목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2항, 제18조제1항제2 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	제2조(금융회사의 범위) 「 <u>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 」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3(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 치 방법 등) ① 법 제2조의4제1	제2조의3(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 치 방법 등) ① -----

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(이하 “본인확인조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(휴대전화를 포함한다)를 이용하는 방법

2. 3. (생략)

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·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(생략)

2.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

-----.

1. 금융회사등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금융회사등은 -----

③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금융회사등이 -----

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
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
으로 확인된 경우

3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조의4(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
조치)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
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절차”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
말한다.

1.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
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
거래계좌(이하 “피해의심거래
계좌”라 한다)로 이용되는지
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
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피해
의심거래탐지시스템”이라 한
다)의 구축·운영

2.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
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
탐지방법의 점검·개선

② (생략)

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
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
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
지·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

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4(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
조치) ① -----

-----.

1. ----- 계좌등이 -----
----- 피해의심
거래계좌등(이하 “피해의심거
래계좌등”이)-----

2. -----
----- 피해의심거래계좌등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금융회사등은 -----

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
5년간 보존해야 한다.

제2조의5(금융거래의 목적 확인)
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
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
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
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
우에는 서면, 팩스, 전자우편 또
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
요청할 수 있다.

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) ① 법 제
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
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
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
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
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
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
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
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
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연락
처·주소, 피해내역 및 신청사
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
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
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

-----.

제2조의5(금융거래의 목적 확인)
금융회사등은 -----

-----.

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) ① ----

---- 금융회사등-----
--.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금융회사등은 -

-----.

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
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
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

금융회사등

③ _____

_____ 금융회사등이 _____

_____.

_____ 금융회사등이 _____

_____.

④ _____
 _____ 금융회사등은 _____

제3조의2(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

청)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
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
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
정지요청서(수사기관용)를 사기
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
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
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
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
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
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
용계좌 명의인의 성명, 사기이
용계좌 번호, 피해내역, 지급정
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
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
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
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
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
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
한다.

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
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
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
피해자·피해금통지서에 피해
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
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

청) ① -----

----- 금융회사
등-----.

-----.

② -----
----- 금융회사등 -----
----- 사기이용
계좌등의 번호-----

-----.

----- 금융회사등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피해자산을 --

피해자·피해자산통지서-----

----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

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4조(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)

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·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: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

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: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

는 금융회사등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) ① -----

----- 금융회사등
은 -----
----- 피해자산
이 송금·이체·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
등-----
---.

1. -----
----- 금융회사등
의 -----

--(금융회사등용)-----

2. -----
----- 금융회사등
의 -----

-----(금융회사등용)-----

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
수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금
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
제출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
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
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
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
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정지를
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
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
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
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
출해야 한다.

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
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
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: 다음
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
에 제출

가.·나. (생략)

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
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
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: 다음
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
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

----- 피해자·피해자산

--

② -----
----- 금융회사등 -----

----- 금융회사등 간 -----

----- . -----
----- 금융회사등 -----

----- 금융회사등에 -----
----- .

1. -----
----- 금융회사등
의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금융회사등
의 -----

가.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
 급정지요청서(금융회사용)
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
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
 요청서류 사본: 지급정지
 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
 나.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
 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금
 통지 서류 사본: 지급정지
 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
 일

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
 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
 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
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
 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
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
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)

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
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
 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
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(元帳)에
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
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

가. -----
 -----(금융회사등
용) -----

 나. -----
 ----- 피해자·피해자산

 -

③ -----

 ----- 금융회사등은 -

 ----- 금융
회사등에 -----.

제5조(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)

① 금융회사등이 -----
 --- 사기이용계좌등-----

 --- 계좌등의 -----
 -----.
 ② -----

다.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.	---. -----
1. 지급정지의 일시, 사유 및 <u>금액</u> 등에 관한 사항	-----.
	1. ----- <u>금액</u> <u>(가상자산의 경우 지급정지 당시의 종목, 개수, 가격 및 해당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)</u> --
	--
2.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, 예금종별 및 <u>계좌번호</u> 등 지급정지된 <u>사기이용계좌</u> 에 관한 사항	2. ----- ----- <u>계좌등의 번호</u> ---- ----- <u>사기이용계좌등</u> -----
	--
3. 지급정지를 요청한 <u>금융회사</u> 에 관한 사항	3. ----- <u>금융회사</u> <u>등</u>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	제6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
① <u>금융회사</u> 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(이하 “채권소멸절차”라 한다)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(이하 “금융감독원”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	① <u>금융회사등</u> 이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
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
조치를 한 경우: 다음 각 목의
서류

가. (생략)

나.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
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
서류 사본

다.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
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
련 서류 사본

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
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
조치를 한 경우: 다음 각 목의
서류

가. (생략)

나.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
사기관의 피해자·피해금
통지 서류 사본

다.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
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
서류 사본

라.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
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
련 서류 사본

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

1. -----

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금융회사등-----

다. ----- 금융회
사등-----

2. -----

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----- 피해자·피해자산

다. -----
금융회사등-----

라. ----- 금융회
사등-----

② -----

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
이란 1만원을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 략)

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
기)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
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
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
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
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
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
실을 증명하는 자료
2.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
증 사본

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법
제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를 말한다.

1. 1의2. (생 략)

---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계좌의 경우 : 1만원

2.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 : 해당
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당시의
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 1만
원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
기) 사기이용계좌등의 -----

----- 사기
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
사등-----.

1. 사기이용계좌등이 -----

2. 사기이용계좌등의 -----

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--

-----.

1. 1의2. (현행과 같음)

2.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. 다만,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.

가.·나. (생략)

3.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

4.·5. (생략)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

2. 사기이용계좌등의 -----

-- 사기이용계좌등과 -----

-----.

----- 사기이용계좌등에 예

치된 자산 -----

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-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사기이용계좌등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금융회

사등-----.

③ -----

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피해환급금의 지급 등)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금융회사등-----
---.

④ -----

----- 금융회사등은 -----

----- 금융회사등 및 -----
-----.

⑤ 금융회사등은 -----

-----.

제9조(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) ① 금융회사등이 -----
따라 피해환급자산-----
-----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·이전-----
---.

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

<신 설>

다.

1.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 단위,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 및 수량 단위로 한다.

2. 피해자가 송금·이체·이전·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에 피해환급자산은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한다.

3. 법 제10조제2항의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은 피해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,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총 피해금액등은 각 피해자의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

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.

<신 설>

제11조(수수료)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. 다만,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으로서 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

2. 그 밖에 금융위원장이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-----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 -----
날로-----

--.

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수수료) ① -----

--. --- 피해환급자산-----

-----.

② (생 략)

제11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금융감독원은
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
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
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
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
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
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
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
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
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

4.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
금의 결정·지급에 관한 사무

5.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
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
관한 사무

6. ~ 8. (생 략)

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
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
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
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
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
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
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피해환급
자산-----

5. ----- 피해환급
자산-----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금융회사등은 -----

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제11조의3(사기이용계좌 등에 관
한 정보의 공유) ① (생략)

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
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
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
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
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
식의 사기이용계좌·피해의심
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
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
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
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
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
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
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
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
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
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
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·피
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
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
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

-----.
제11조의3(사기이용계좌 등에 관
한 정보의 공유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금융회사등은 -----
----- 사
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
계좌등-----

---- 사기이용계좌등·피해의심
거래계좌등 -----

-----.

-----.

③ -----

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
피해의심거래계좌등-----

----- 사기이용계좌등·피
해의심거래계좌등 -----
----- 금융회
사등의 -----

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<u>금융회사</u>에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. 1.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<u>금융회사</u> 2. <u>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</u> 3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<u>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</u>	----- <u>금융회사</u>등에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금융회사</u>등 2. <u>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</u>등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계좌</u>등을 관리하는 <u>금융회사</u>등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75